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효 사상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덕목으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통념적 가치를 지님.

나. 이러한 우리의 대표적 정신문화인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에 이르는 모두가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다.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행 및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 나. 센터의 업무, 위탁,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3 ~ 안 제19조의6)
- 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의7)
- 라. 효문화 진흥 및 효행장려 사업 수행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bkim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3(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4.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5.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6.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9조의4(센터 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효행장려·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의5(센터 지도·감독)①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의6(센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의7(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8(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9조의2(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u><신 설></u>	제19조의3(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4.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5.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6.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u><신 설></u>	제19조의4(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행장려·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9조의5(센터 지도·감독)①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신 설></u>	제19조의6(센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7(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19조의8(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별 첨 >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효행 및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해 신설한 사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개정 조례에 명시한 효행장려·지원센터 설치, 운영

나. 추계 결과

- 연간 총 소요액 : 300,000천원
 - 인건비 (100,000천원) : 급여, 수당, 퇴직급여, 4대보험 등
 - 운영비 (50,000천원) : 수용비, 시설유지관리비, 여비 등
 - 사업비 (150,000천원) : 효행장려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지원
효행장려 정보기반 구축 및 제공
효 관련기관(단체)간 협력사업
효 장려위한 출판·홍보, 그 밖의 관련업무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기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입	△ △ △ △						
	△ △ △ △						
	소계						
세출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조달		사비100%	사비100%	사비100%	사비100%	사비100%	사비100%
국 비							
시비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특별회계						
	기 금						
군 · 구비							
민 간							
기 타							